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고,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하는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이 개정(법률 제18308호, 2021. 7. 20. 공포, 7. 20. 시행, 제5조의2 및 제86조 개정규정은 2022. 1. 2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규정, 민감정보 처리 권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,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타 지원금 및 장려금과의 중복 지급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률 조항 위치 변경(기존 법 제5조의2제3항 → 개정 법 제5조의제4항)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(안 제5조의2제3항)

나. 타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적게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 차액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,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(청년내일채움공제)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제한에서 배제(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9조제2항)

- 다.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무에 추가하고, 관련 정보 처리 근거 마련(안 제82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82조의2제11호의2 신설)
- 라.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제출 명령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,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규정 마련(안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호)
- 마. '과태료의 부과기준'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관련 법 조항(법 제5조의2제3항) 추가 인용(안 [별표2]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 전단 중 “법 제5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5조의2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이 법 제30조에 따른 장려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지급받은”을 “지급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는”으로 한다.

제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결과 제출 명령

제82조제2항제1호 중 “법 제5조의2”를 “법 제5조의2제5항”으로, “점검 및”을 “점검,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2.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
별표 2 제2호나목 중 “법 제5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5조의2제3항 또는
제5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2제3항, 제82조, 제82조의2,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「고용보험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-----.
제8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 <u><신 설></u>	제8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1.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명령 2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1. ~ 4. (생략)	② ----- ----- ----- -----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

1. 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교육교재 등의 개발·보급	1. 법 제5조의2제5항----- ----- ----- 점검,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-----
2. ~ 14. (생략) <u><신 설></u>	2. ~ 14. (현행과 같음) 14의2.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지원
15. ~ 40. (생략) ③ ~ ④ (생략)	15. ~ 40. (현행과 같음)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8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(생략)	제8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(현행과 같음)
1.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에 관한 사무	1. 법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----- -----
2. ~ 11. (생략) <u><신 설></u>	2. ~ 11. (현행과 같음) 11의2.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
12. ~ 25. (생략)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	12. ~ 25. (현행과 같음)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
1. 일반기준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	1. 일반기준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 개별기준	2. 개별기준

가. (현행과 같음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법 제5조의3제2항을 위반 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 관하지 않은 경우	나. 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 조의3제2항 ----- ----- -----
다. ~ 차. (생략)	다. ~ 차. (현행과 같음)